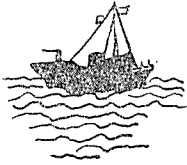


圖 書 館 法 改 正 試 案

—大學圖書館을 中心으로—



任 鍾 淳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 整理主任)

編輯者註：이 글은 1969. 9. 11 韓國外國語大學 圖書館에서 開催된 全國大學 圖書館大會에서 發表된 論文임.

一. 序 論

二. 現行圖書館關係法에서 問題 될 點

1. 施設基準 問題
2. 圖書館資料 問題
3. 人事 問題
 - a. 任用 問題
 - b. 司書職員數 問題
 - c. 待遇 問題

三. 終言(改正試案)

一. 序 論

教育은 弘益人間的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公民으로서의 자질을 具有케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여 人類共榮의 理想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이념에 있어 大學教育은 그들에게 深奧한 眞理를 探求케 하고 高邁한 인격을 陶冶시켜 社會생활에서의 有능한 인격을 輩出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大學에서의 教育은 학교교육에 있어 기초적 단계의 總 完成을 이루는 것이며, 이것을 밀거름으로 하여 社會生活 여러면에 適應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人生 생활에 있어 중요한 단계인 大學教育에 있어 眞理를 探求케 하는데 中樞의 役割을 擔當하고 있는 것은 圖書館인 것이다. 卽 大學圖書館은 학문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적자원의 위치에 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適切한 수의 有능한 전문직에 의하여 大學의 일반적 事業목적을 달성하는데 힘이 되는 봉사와, 나아가 그가 위치한 大學校의 特定한 教育目的을 달성하기 위해 자료구성은 東西洋의 傳來文物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그 學校의 敎科課程에 중심이 되는 特定分野의 자료도 함께 선택 비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大學圖書館은 자료의 이용과 봉사면에 있어 學校의 講義計劃과 밀접한 關係의 유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卽 大學圖書館은 講義計劃과 實行에 있

어 충분한 보조를 하는 외에, 高度한 연구에 종사하는 교수로부터 신입 학생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正當한 要求를 충족토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一平生 자료 이용의 습관을 育성하게끔 자극을 주어 學校教育의 테두리를 벗어난 후 보다 廣範圍한 各自의 전공분야의 學問領域에서 그의 特유한 역할을 다 하게끔 지적생활을 인도해 나아가 갈 수 있는 terrain을 길러주는 것이다.

二. 現行 圖書館 關係法에서 問題 될 點

그러면 이러한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 大學圖書館의 발전을 위해 법적으로 어떤 규제와 保障을 받고 있는 것인지 法的 테두리에서 살펴 보기로 하겠다. 現在 大學圖書館에 關한 圖書館의 規定은 大學設置基準令 第8條 第4項 및 第11條와, 圖書館法 第3條, 第6條 第1項, 第25條 및 第26條와, 同法 施行令 第2條 第2項 그리고 第4條 등에 成文化되어 있다.

그중 大學에 圖書館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1) 大學設置基準令 第8條 第4項에 「校舎에는 圖書館 등이 包含한다」

(2) 圖書館法 第25條에 「實業高等專門學校, 初級大學, 大學(校), 教育大學, 師範大學에는 圖書館을 두어야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重言 하건대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學術의 深奧한 이론과, 광범하고 精確 緻密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지도적인 人格의 陶冶를 目的으로¹⁾ 하고 있는 大學에 있어 大學圖書館은 知的 資源의 보존자요, 學問의 위대한 계승자요, 자료를 이용시킬 原動力의 位置에서 있는 것이다. 이러한 大學圖書館의 기능을 발휘하여 崇高한 大學教育의 목적을 완수하는데 큰 關鍵이 되는 것은 그 圖書館의 施設, 人員, 資料의 完, 不完이 左右하게 되는 것이다.

法이란 國家가 그 법규하에서 국민들의 安寧 복지를 보호 育성하는 한편 社會질서의 문란 파괴를 방지하고 질서 정연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곳에 그 價値가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圖書館法도 第4章에

1) 教育法 108條

規制를 주는 罰則을 두었으나 本來의 목적은 건전한 圖書館運用的 育成을 의미한 것이며, 나아가 국민 전체에 知的 에너지를 附與하여 국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면 圖書館運用的 最上策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施設, 人員, 資料의 세가지가 잘 調和되고 이것이 적절하게 봉사되고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지에서 본인은 知的 活力素를 공급 봉사하는 도서관으로서 현행 圖書館關係法 중에서 개정되어야 할 몇 가지에 대해 一言을 제시 하고자 하는 바이다.

1. 施設基準 問題

大學圖書館施設基準으로 圖書館法 第25條 第2項에 「學校圖書館의 施設基準은 따로 閣令으로 定한다」라 하였고, 圖書館法 施行令 第2條 第2項에 「法 第25條 第2項의 學校圖書館의 施設基準은 따로 各級學校의 施設基準令에 의한다」로 되어 있다. 이는 1963년 10월 28일에 공포된 도서관법과, 1665년 3월 26일에 공포되었고 1967년 3월 27일에 개정을 본 同法 施行令에서 설치기준을 1955년 8월 4일에 제정을 보았고, 그후 1967년 9월 27일에 개정을 본 대학설치기준령 제11조를 적용하게 한 것이다. 即 大學設置基準令 第11條에 보면 「圖書館의 設備와……(中略)……는 다음 基準에 의하여야 한다.

- ① 閱覽室, 定期刊行物室, 書庫로 갖출 것
- ② 閱覽室에는 學生定員의 15% 以上을 收容할 수 있는 座席을 設置할 것」이 適用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問題가 될 것은

a. 大學圖書館의 設置基準을 大學設置基準令에 의한다고 明示하였는데 將次 圖書館의 필요에 따라 설치기준에 添劑이 필요할 때 圖書館法 뿐만 아니라 大學設置基準令을 修正 해야 할 必要성과 또는 절차상 問題를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것이다.

大學圖書館 施設基準을 大學設置基準令에 의한다고 制定한 것에 대해 法定定 당시의 문교당국은 이를 학교 도서관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생각하여 이 施行令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即 各 大學圖書館의 施設을 마련하도록 예산을 配定하는 것은 각 학교 經營자이기 때문에 항상 시설에 관심과 주의를 가진 학교의 經營자로부터 이에 포함 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예산면으로 보아 그리 규정된 것이 되었다면 시설과 같이 학교 經營자 측에서 管理하여야 할 人件費에 속하는 司書配當條項이 教育法 施行令 第5節 學校의 一般職員에 包含되지 않고 따로 圖書館法 施行令 第6條에 規定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산상 管理란 같은 성질임에도 시설과 인원이 각기 다른 특별법에 속해 있

음을 알 수 있다(이는 司書職을 圖書館法 施行令에 規定한 것은 學校의 一般職員과 구분한 것이다). 따라 本人은 大學圖書館施設基準을 教育法 施行令에서 分離하여 圖書館法 施行令에 詳細히 規定 했으면 한다.

b. 各種閱覽室에서 열람실(일반을 뜻할 것임)과 定期刊行物室은 明示하였으나 圖書館의 이용자가 정보를 구하고 또 조사와 연구를 위하여 도서관자로를 이용할려고 할 때 그 이용자에 능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參考圖書室의 名稱이 落되었으며

c. 大學圖書館 機能面에서 필요한 연구실, 목록실, 복사실, 전시실, 시청각실 등이 빠져 있다.

d. 書庫에 단적에 대해 구체적 規定이 없다. 물론 이것을 數的으로 基準을 둔 學生 1人當 冊數를 1坪當 收容 可能 冊數로 計算하면 算出이 되겠으나 어느 정도 범위를 定함이 어떨까 한다.

(例 : 10,000명×30년÷766책(1坪當 收容可能 冊數=391坪)

2. 圖書館資料 問題

圖書館에 있어서 資料構成의 기준은 圖書館法 第25條 第2項에 「各級學校의 施設基準에 依한다」고 規定되어 있다. 이에 關해 大學設置基準令 第11條 3項에 보면 「圖書는 學生 1人에 대하여 30卷 以上으로 하되 學科當 5,000卷 以上과 學術雜誌 5種 以上을 設置할 것, 다만 初級大學(醫藥科를 包含한다)과 教育大學에 있어서는 各已 3分の 2로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도서관에 있어서 자료는 各급도서관에 모두 適用되는 問題이겠지만 특히 深奧한 研究를 하는데 대학도서관에서 資料없이 어떻게 奉사를 한다고 할 것인가. 이리하여 大學設置基準令 第11條에서 備置할 圖書의 數量을 規定하고 있으나 資料의 정의와, 數量을 規定한 것에 對해 수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즉

a. 도서관에서 具備할 資料를 도서관에만 국한하고 있다. 이것을 廣義로 해석하면 '도서관 外획을 도서관자로 전부르 간주할 수 있으나, 그 다음에 規定한 권수를 참작하건대 이는 순전히 도서관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도서관에 있어서 資料를 도서관이라 인식하였으나, 현대의 도서관이 가지는 도서관자료란 의의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도서관자료에는 단행본인 도서관이 아니라 非圖書資料에 포함될 각종 기록류, 視覺資料, 聽覺資料 등이 모두 포함됨으로 資料를 도서관 外획으로 고쳐 시킬 것이 아니라 융통성있게 도서관자료로 고쳐야 할 것이다.

b. 또 비치할 資料를 數量적으로 規定 하였는데 이는 數的보담은 質的 問題로 明示하여야 한다. 數量的인 規定로 말미암아 대학도서관에 부적당한 資料를 다수 소장하여 결과적으로 서고의 비경제적 운영을 가져오

는 폐단을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폐단 즉 서고의 비경제성과 자료구성의 비타당성을 지향하고 質의面으로 자료구성을 향상하기 위해 예산상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도서관자료의 구성은 (1) 敎科課程의 범위와 성격 (2) 학과과정의 학과 수와 성격 (3) 교수방법 (4) 학부 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생수 (5)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도서관의 이용으로도 쉽사리 만족할 수 없는 보다 전문적인 자료에 대한 교수들의 요구 (6) 그 대학도서관의 특징을 나타낼 特種의 도서관자료 (7) 민족적 위치에서 보존연구에 필요한 국가적 고전 등을 고려해서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자료구성 정책에 의한다면 그들 비치될 자료는 도서 뿐만 아니라 非圖書資料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현재의 大學設置基準令 第11條 第3項에는 이러한 非圖書資料에 대한言及은 없으며, 만약 있다하여도 非圖書資料가 가지고 있는 特異한 性格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전부 나열하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여러 여건으로 보아 도서관비도서자료에 대한 수적 구성 보다는 질적 규정을 도모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특히 설치기준령에서 학술잡지에 관해서는 各 科當 5종 이상이라 하였는데 현재 세계에서 발간되는 이들 종류는 수만종이 될 것이며(현재 우리나라는 166종임)³⁾ 그중 필요한 각과 5종류라 하더라도 가격면에서 상당한 퍼센타이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각 대학도서관이 도서의 설치기준령을 맞추기 위해 권수에만 치중한다면 효과있는 학술잡지의 비치 봉사만 있을 수 없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권수적 통계수자를 나열하는 것 외에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수자적 폐단은 불용자료의 제적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국공립대학에서는 정부재산관리상 큰 애로가 있겠으나) 자료의 수량적 규정을 제본하던대 이 기준의 모순은 그나마 도서만을 양으로 규제하였으며 그 棼마저 아무 기준없이 한 느낌이 든다. 대학도서관에서 양도 고려할 것이지만 그보다도 질이 급선무인 것이다. 학생 1인당 수량만으로 기준을 삼는다면, 가령 현 재적 학생수에 대한 도서의 수량이 확보된 후 새로운 학과가 증설 안 됐다면 그것만으로 족하고 더 증가 안해도 가능할 것이 아니겠는가. 시설면에 있어 건물이나 운동장 등은 새로운 학생수가 증가하지 않는 현상유지는 될 수 있으나 학술문화의 변동, 발전, 새로운 학설의 발견에 따르는 구학설의 도태 등 항상 새로운 자료의 비치가 요망되는 도서관자료에 있어 이 기준령의 도서수량만을 악용하게 되면 그 장서의 어느 정도가 쓸모 없는 것만을 간직하고도 도서관봉사를 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우려성이 나올 것이다.

물론 기준령에 1인당 30권이상이라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모든 대학 도서관이 수량에만 한정 시킬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법조문으로 볼 때 그리 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또 30권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質 즉 換言 해서 가격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10원 가치 도서도 1권 1,000원 가치 도서도 1권이 라 수량만으로 간주한다면 그 결과는 학문의 기초자료 또는 연구에 꼭 필요한 값이 비싼 자료의 구입은 역제를 당할 것이다. 요는 대학도서관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과 연구하는 교수를 상대로하여 설립되어 있느니만치 학교 전체 예산에서 얼마를 사용한다는 범위내에서 자료의 적절한 선택을 위해서 선택위원회를 두고 질과 양을 고려해서 자료 구성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人事問題

도서관에 주어질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는 조직된 인간의 노력이 본질적이며 이의 필수 요건은 도서관의 전문직원과 보조역할을 하는 비전문직원의 통합된 도서관직원의 구성이다. 도서관의 기능을 발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합리적 경영이 요청되며 이에 는 퍼를 통하게 하며, 생명을 약속시킬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조직의 원동력이 되는 전문직의 임용과 대우문제는 어떠한가.

a. 任用問題

도서관법 제26조에 대학도서관에 종사할 직원을 규정하였으며, 이 직원들의 자격으로서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에 正司書와 準司書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公務員試驗施行規則에 應試資格까지 두고 있다. 이렇게 도서관원의 자격에 대해서 正司書와 準司書로서 자격을 구분하였는데 그러면 그들의 임명은 어떠한지. 공무원 임용령의 저축을 받지 않는 사립대학도서관직원을 제외하고 이의 저축을 받는 국공립대학도서관의 사서직 임용은 어떠한 기준에서 시행되는지? 국가공무원법 제34조에는 중무처에서 공무원 임용을 한다고 하였으나 그후 공무원 임용령 제5조에 의해 각기관에게 4급, 5급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司書職도 이 一般職 公務員의 임용령을 適用받고 있는데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시험과목이다. 즉 5급 특별채용시험(자격이 없어도 2년 이상 경험자에 시행한다)이나 轉職시험 과목에는 1차(도서관 조직과 관리) 2차(분류 편목) 시험에 도서관학과목이 있는데 5급 사서 서기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제1차 시험이나 제2차 시험에 전연 도서관학 과목이 없다. 이렇게 도서관학 과목이 없는데도 5급 사서 서

3) 東亞日報 1966年 8月 15日字

기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司書란 무슨 목적하에 職列에 속해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인구와 직장을 비례하여 공급이 수요보다 과잉하여 司書 및 準司書 자격 소지자가 5급 사서 서기직이라든가 응시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사정이지만 도서관에 근무할 사람을 채용하는데 사서직을 맡을 사람이 이수해야 할 도서관학 과목이 없다는 것은 채용 자체에서 도서관법을 閑視 한 것이 아닌가 한다. 더구나 司書職을 일반적 채용과 혼동한다는 것은 도서관법 26조와 동법 시행령 4조에 司書 및 準司書資格을 정해 놓고 시험과목에 도서관학 과목도 없이 단지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면 司書職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임용령으로 채용하는 자체가 司書職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 국공립의 대학 도서관을 막론하고 사서직원의 자격기준에 있어 그 均衡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도서관에는 전문적사서 외에 이를 보조할 일반서기직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채용에 있어서 자격 취득자는 5급에 있어서 무시험 또는 4급 갑류로부터 초임하든지 또는 5급 司書職을 별도로 두는 것이 상책이 아닐까 한다. 이는 대학에 知的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 대학의 學的면에서 발전에 부응할 대학도서관의 기능을 좌우할 인적 자원면에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b. 司書職員數問題

도서관법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관찰해 보면 시설기준은 대학설치기준령에, 사서직 채용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도서관의 기능을 발휘할 인원구성에 있어 수적규정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하여 교육법 시행령 제54조 「학교의 사무직원」과 별도로 취급되어 있다. 이를 보건대 대학에서 司書職과 一般職을 달리 구분한 것이라 보겠다. 그러나

(1) 도서관법 제6조 3항에서 司書職員數를 규정하는데 대학과 대학교내의 단과대학을 구별하였다. 즉 종합대학교가 아닌 대학의 도서관에는 사서직원을 규정하였으나 종합대학교내의 단과대학에는 사서직원수를 규정하지 않았다. 종합대학교에서의 각 단과대학이 한 캠퍼스내에 있고 도서관의 운용이 중앙도서관에서 이행된다면 문제는 다르다. 그러나 예외는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즉 대학 교내에서 각 단과대학이 동일 구내에 위치 하지 않고 각 단과대학별로, 또는 몇개의 단과대학이 한 집단이 되어서 따로이 위치하고 있다면 자연히 따로 도서관을 설치하고 자료의 수서부터 운용에 이르기까지 단독 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예 : 서울대학교). 이런 경우에 법시행령 제6조 제1항3에 있는 大學(大學校의 大學을 除外)을 적용케 되면 이러한 단과대학의 도서관에는 司書職員을 두지 말라는 것인지, 또는

司書職아닌 一般職員만으로 운용하라는 것인지, 이 語句의 是正이 요구된다.

(2) 司書職員의 수를 도서관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하였는데 이는 너무 過少하게 규정한 것이다. 즉 深奧한 학문연구와 인격도야의 상아탑인 대학의 목적을 완수 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대학도서관의 업무는 학계의 진전과 새로운 학술적 업적의 발견, 그리고 이에 따른 각종 출판 및 계반 자료의 홍수적 발간물 등의 처리는 물론 이들 1차자료를 종합하여 정보봉사를 전제토한 2차자료의 작성 제공 등, 과거의 개괄적, 포괄적 봉사 범위를 초월하여, 세밀, 소주제적으로 세분화하는 업무량과 더구나 재학생 뿐만 아니라 교육법 시행령 제53조에 규정한 교원수 및 동 54조에 규정한 사무직원 등을 봉사 대상으로 하여야 할 司書職員의 수로서는 증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물론 도서관에는 司書職員만이 아니라 一般事務職員도 있어야 하는데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보조적 역할을 할 一般職員은 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총당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서직원으로만 운용한다는 것인지 또 司書職員수에 보조적역할을 할 一般職員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지 명확성이 필요하다.

c. 待遇問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司書職 人員數의 규정을 교육법 시행령 제54조의 一般職員과 별도로 도서관법 제26조에, 그리고 도서관법 시행령 제6조에 인원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一般職과 特殊職의 구분에 불과하며, 一般事務職員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를 待遇上 우대하고 있는가. 법적으로 아무 규정도 없는 것이다. 국공립대학도서관의 사서직은 공무원법 제4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一般職 公務員 俸給表에 준하고 있으며, 사립대학도서관의 사서직도 일반 사무직원 봉급에 준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은 深奧한 학문의 연구를 쌓고, 또 高邁한 인격의 도야를 위한 대학의 목적을 완수하는데 있어 강의 계획과 실행에 대해 충분한 협조를 하는 외에, 고도의 연구에 종사하는 교수로부터 신입 학생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료의 매개 또는 검색봉사를 사명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 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적 사서는 교단에 서지않는 교수인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보건대 대학도서관의 전문적 사서의 대우는 응당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1) 司書職 手當支給의 問題(實在問題)

司書職의 직무 내용이 일반적과 달리 정신면, 위생면, 학술면 및 과중한 업무면에서 시달리고 있느니만 치 근무조건을 감안하여 司書職手當이 마련되어야 한다.

(2) 教授職位 問題(形式問題)

전기한 수당지급도 한 방편이겠으나 그의 직무내용이 교수 및 학생들이 학문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검색 안내, 정보 근원의 색출방법 제시, 자료의 통일적 정리 등과 실 사이 없이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간행되는 모든 學究에 필요한 자료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어느 누구에 필요한 것인가를 전제로 항상 그 자료의 봉사에 관한 것을 연구 실행하는 전문직 사서는 그 學究的 研磨에 있어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傳授하고, 연구의 방법을 지시하는 교수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전문직 사서의 대우를 교수직의 지위와 동일하게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각 대학에서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곳이 많으며 특히 Felix E. Hirsch 가 의장으로 있던 大學 및 研究圖書館協會 基準委員會에서(ACRL Committee on Standards) 「專門職 司書는 教授의 地位를 갖어야 하며 教授陣이 갖는 조건을 가져야 하며 教授陣이 갖는 조건을 가져야 한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⁴⁾ 일본에서도 幹部職員의 教授職 關興에 대한 것을 日本文部省 學術局에서, 그리고 日本私立圖書館協會에서는 사립대학 도서관의 전문직 사서의 교수적 대우책을 발표한 바 있다.⁵⁾

또는 이런 견지에서 전문직에 대한 법적지위에 향상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三. 終 言

이상에서 논한 것을 종합하면

1. 施設問題

최소한 자 실의 명칭을 나열하고 등등으로 할 것. 그리고 도서관의 설비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2조 2항에 학교종류별로 되도록 상세히 규정하고, 대학설치기준령 제11조에는 「圖書館의 設備는 圖書館法 施行令 第2條 2項에 準한다」고 改定하여야 한다.

2. 資料問題

資料를 圖書에만 국한 시키지 말고(定刊物 5種 以上도 規定 했지만) 비도서자료도 포함시켜 넓게 도서관 자료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1인당 몇권 이상이란 한정을 두어 수량에만 따르지 말고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정에 「학교의 총경상비중 몇%를 도서관자료로 구입에 充당한다」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3. 任用問題

司書職의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도서관학 과목을 응

시케하여 질적향상을 도모하며 司正書, 準司書, 一般職으로 구분하여 초임과 승진에 차이를 두어 전문직의 권익을 옹호해야 할 것이다.

4. 人員數 問題

도서관법 제6조 제1항에 있는 司書職員數의 規정을 教育法 施行令 第53條 및 54條에 규정된 교직원수와 재학생을 상대로 하는 단치 이의 증원이 요망 된다.

5. 待遇問題

a. 司書職 手當의 支給

b. 專門職 司書의 地位를 教授職과 同一하게 규정할 것. 그러나 단치 대학도서관에 근무하는 司書라고 하여 이러한 待遇를 바랄 수는 없을 것이다. 교수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는

(1) 도서관학 대학원을 졸업한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2) 도서관학과 졸업자로서 타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3) 대학도서관에 어느 했수 이상 근무하고 있는 正司書 자격 소지자가 도서관학에 관한 저서 또는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어느 특정기관의 심사에 합격한 者로 하여야 한다. 이는 대학도서관의 司書職自體가 계속적 연구 업적을 쌓아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고려한 것이다. 이런 연구의 비교점점에서 대학도서관은 발전할 것이며, 이르게 대학교육 목적의 완수에 현재 보다 더한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映畫·演藝年鑑 1970年版

洋裝・650面・寫眞・3,500원

一般年鑑은 各新聞 通信社에서 發行하는 것이 많으나 映畫 演藝 放送을 主로한 特殊 年鑑은 아직 發行한 적이 없었다.

이번에 發行케 된 本年鑑은 34편의 國產映畫, 6千曲의 디스크, 韓國을 主로 역은 世界映畫史年表, 2萬名에 가까운 映畫, 演藝, 藝術人 등의 名簿 등은 좋은 資料이며 6百名의 寫眞 收錄에는 淸으나 親近感을 준다.

海外公館, 各種, 圖書館, 行政官廳, 映畫, 藝術人들의 必須의 寶鑑이다.

注文: 國際映畫社

서울 中區 藝場洞 2의14

전체 서울 1066 ㉠ 8563・7927

4) 이병목 역 “대학도서관을 위한 기준” 도형월보 4권 2호 3월호 1963. p. 68.

5) 武田虎之助編 圖書館法令과 基準. 1956年 5月 p. 83.